

의사면허 취소 압박...전공의 의료현장 돌아올까

정부 연일 강경책...광주·전남 전공의 282명에 업무개시 명령 “의대증원 반발 사직서 제출은 정당한 사유 없어 법적 처벌 가능”

광주·전남 전공의 70%가 넘는 인원이 이틀째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라는 강경책이 전공의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를 고발하고 의사면허 박탈이 현실화할 경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총 376명(전남대병원 268명, 조선대병원 108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282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보냈다.

100여명의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휴가 기간 중이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잠시 병원에 들렀다 다시 병원을 빠져나가는 등 애매한 자세를 취하며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의사들은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집단행동을 보이는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및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의 관건은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라고 설명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진료 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정당한 사유로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를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해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의사들이 정당한 진료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의료법이나 제반 규정을 두루 살피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인 이유는 의대증원 증원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고 개인적 사유는 법률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사직서 제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된 21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형사 고발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재교부 금지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으면 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휴대전화로 깨우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시명령 당사자가 송달 받아야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명령서가 반송되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

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모든 언론에서 현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피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끈다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이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1100여명 휴학계 제출

대학측 수업일정 연기 등 대책 고심

의대정원 2000명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광주지역 의과대학생 11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학사일정을 3월초로 늦추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대학교는 21일 오후 4시 기준 의대 재학생 732명 중 76.9%에 해당하는 56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5명의 휴학은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 558명의 휴학계는 반려됐다.

전날 281명이 휴학계를 냈지만 하루만에 282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학생들은 휴학의 이유를 '기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지난 19일 개강은 했지만 학사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최종결정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에 대해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의대 역시 현재 정원 625명 중 600여 명

이 휴학계를 냈다. 사유는 대부분 개인 사정 또는 기타 등이다.

조선대 의대의 학사 일정도 재조정됐다. 다음 달 4일로 다가온 개강에 앞서 예정됐던 임상 실험 등 수업 일부가 미뤄졌다.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휴학계 수용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학이 학사 일정을 조정했지만 의료사태가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대학들이 늦춰놓은 수업 개시일 전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을 지속하면 출석일수 등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무·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자 등 3명 경찰 고발

선거일 120일 이전 피켓 선거운동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총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다중이 오가는 시장에서 자

원봉사자 등 10여명을 모아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 공약발표회를 개최하고 A씨의 이름과 선거공약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A·B씨가 다음날에도 자원봉사자 등 10여명과 함께 같은 피켓을 들고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관련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토론을 금지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모든 예비후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위법행위는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 평여동 도로 건설 폐기물 화물차 전도 2시간 교통 통제

여수의 한 국도에서 건설폐기물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넘어져 2시간 가까이 교통이 통제됐다. 21일 여수경찰과 여수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여수시 평여동 엑스포 터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건설 폐기물 화물차가 1차로에서 넘어졌다.

화물차에는 운전자 포함 2명이 타고 있었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물차에 실린 건설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1시간 40분간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